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한덕수 (행정안전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등교육기관의 의학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의대교육지원관 및 의대교육기반과를 각각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되, 그 중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은 교육부 정원 1명(3급 또는 4급 1명)의 직급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초·중등학교 학생복지정책 업무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1명)하여 배정하며, 학생의 신체·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책임교육정책실장 밑에 두는 학생건강정책관을 학생건강정책국으로, 지방교육자치와 초·중등 교육 간 연계 강화를 위하여 교육자치협력안전국을 책임교육정책실장 밑에 두는 교육자치안전정책관으로 각각 개편하고, 교육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차관보, 기획조정실 1개 담당관 및 사회정책협력관 1개 담당관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어린이집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국

립대학병원,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협업체계 강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동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의 정원 5명(5급 3명, 6급 2명) 및 교육부 소속기관인 국립특수교육원의 정원 1명(8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교육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2. 11. ~ 12.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자치협력안전국”을 “학생건강정책국”으로 한다.

제7조제3항에 제17호의4 및 제17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4. 교육시설 업무의 총괄

17의5. 각급 학교 시설사업 계획의 수립·지원 및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

제11조제3항제40호부터 제5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5호부터 제66호까지를 각각 제61호부터 제72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5호부터 제6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0. 지방교육자치제도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41. 교육자유특구 정책의 수립·시행

4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정원(교원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43.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의 인사·교육훈련·복무·급여 제도 등에 관한 사항

44. 시·도교육청 평가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45. 교육 분야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 제고에 관한 사항

46. 유치원 및 초·중등 국립학교 소속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

로자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 및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47. 교육감 소속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 및 단체교섭 지원에 관한 사항

48.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실태조사 등 현황 관리

49. 국립대학 소속 대학회계직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 및 단체교섭 지원에 관한 사항

50. 지방교육재정 기본정책 및 재원의 확보·배분에 관한 사항

51. 지방교육재정 분석·진단·성과관리 및 재정 건전화

52.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의 운영과 예산·결산 분석

53. 학교설립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

54. 지방교육 행정·재정 통합시스템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55. 학교 및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수립 총괄

56. 학교안전 업무의 총괄

57. 재난대비 매뉴얼, 안전 관련 교사·학부모 교육자료의 개발

58. 범정부 차원의 안전 관련 연계 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체제 구축 등

59. 교육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0. 안전관리·재난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학생건강정책국) ① 학생건강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정책의 기획·총괄
2. 교육환경보호제도의 관리 및 개선
3. 학교급식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5. 학생 자치활동의 활성화 및 생활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6. 인성교육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7. 학교체육 진흥 시책의 수립·시행
8. 초·중등학생 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
9. 초·중등학교 통일교육 및 통일대비 교육정책의 수립·시행
10. 초·중등학생 독서교육 활성화 및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1. 학교 구성원 사회·정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2.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13. 학교부적응 예방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14. 학생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의 구축·운영
15. 학교 폭력 예방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0장의 제목 “한시정원”을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으로 한다.

제10장에 제41조 및 제4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대교육지원관) ① 교육부 인재정책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

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의대교육지원관을 둔다.

② 의대교육지원관에 지원관 1명을 두고, 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의대교육지원관은 제10조제3항제51호·제53호 및 제41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재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④ 의대교육지원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41조의2(의대교육기반과) ① 교육부 인재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의대교육기반과를 둔다.

② 의대교육기반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과대학 교육지원 총괄
2. 의과대학 학사(學事)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3. 의과대학 관련 고등교육기관과의 협력
4. 의과대학 발전방안의 수립·시행
5. 의과대학의 교육역량 제고 정책 및 사업 추진
6. 의과대학 교원인사·학생정원 제도의 개선 및 운영
7. 의과대학 교육 기반 조성 총괄
8. 의과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의 수립 및 대학 학생정원 자율책임기준의 이행 점검

9. 의과대학 교원의 인사 제도 개선 및 복무에 관한 사항
 10. 의과대학 관련 국립대학 교원 정원 배정 및 총액인건비제, 성과연봉제 운영에 관한 사항
 11. 의과대학 관련 국립대학 조교 정원 배정 및 연구성과급 지원에 관한 사항
 12. 국립대학병원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3. 국립대학병원 운영 관리 및 병원장·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14. 사립대학 의과대학 시설 및 실험실습기자재 융자 지원
 15. 그 밖에 의과대학 교육지원과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 ④ 의대교육기반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 ⑤ 별표 3의2의 직급별 정원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중 총계 “692”를 “687”로 하고, 일반직 계 “595”를 “59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74”를 “569”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211”을 “210”으로 하고, 일반직 계 “163”을 “16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52”를 “151”로 한다.

별표 3 1)부터 3)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의 개정규정[별표 3의2 제1호의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의 배정을 위해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정원 1명(3급 또는 4급 1명)의 감축 부분은 제외한다]
2.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3. 부칙 제2조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교육부의 정원 5명(5급 3명, 6급 2명)과 교육부 소속기관의 정원 1명(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3의2 제1호의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 정원 중 3급 또는 4급 이하 정원 1명(3급 또는 4급 1명)으로 본다.

[별표 3의2]

교육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41조제4항 및 제41조의2제4항 관련)

1. 의대교육지원관(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고위공무원단	1

2. 의대교육기반과(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

총계	4
일반직 계	4
4급 이하	4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하부조직) ① (생 략) ② 교육부에 운영지원과 · 인재 정책실 · 책임교육정책실 · 교육 복지늘봄지원국 · 영유아정책국 및 <u>교육자치협력안전국</u> 을 둔다. ③ (생 략)	제4조(하부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학생건강정책국</u>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기획조정실장) ① · ② (생 략)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 17의3. (생 략) <u><신 설></u> <u><신 설></u>	제7조(기획조정실장) ① · ② (현 행과 같음) ③ ----- -----. 1. ~ 17의3. (현행과 같음) <u>17의4. 교육시설 업무의 총괄</u> <u>17의5. 각급 학교 시설사업 계</u> <u>획의 수립 · 지원 및 민자유치</u> <u>사업에 관한 사항</u> 18. ~ 36. (현행과 같음)
제11조(책임교육정책실) ① · ② (생 략)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 39. (생 략) 40. <u>학생의 신체적 · 정신적 건</u> <u>강 증진 정책의 기획 · 총괄</u> 41. <u>교육환경보호제도의 관리</u>	제11조(책임교육정책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39. (현행과 같음) 40. <u>지방교육자치제도 기본정책</u> <u>의 수립 및 제도 개선</u> 41. <u>교육자유특구 정책의 수립</u>

및 개선

42. 학교급식 기본정책의 수립

· 시행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43. 민주시민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44. 학생 자치활동의 활성화 및 생활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45. 인성교육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46. 학교체육 진흥 시책의 수립·시행

47. 초·중등학생 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

48. 초·중등학교 통일교육 및 통일대비 교육정책의 수립·시행

· 시행

4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정원(교원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43.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의 인사·교육훈련·복무·급여 제도 등에 관한 사항

44. 시·도교육청 평가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45. 교육 분야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 제고에 관한 사항

46. 유치원 및 초·중등 국립학교 소속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 및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47. 교육감 소속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 및 단체교섭 지원에 관한 사항

48.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실태조사 등 현황 관리

<u>49. 초·중등학생 독서교육 활성화 및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정책의 수립·시행</u>	<u>49. 국립대학 소속 대학회계직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 및 단체교섭 지원에 관한 사항</u>
<u>50. 학교 구성원 사회·정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u>	<u>50. 지방교육재정 기본정책 및 재원의 확보·배분에 관한 사항</u>
<u>51.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u>	<u>51. 지방교육재정 분석·진단·성과관리 및 재정 건전화</u>
<u>52. 학교부적응 예방 종합대책의 수립·시행</u>	<u>52.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의 운영과 예산·결산 분석</u>
<u>53. 학생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의 구축·운영</u>	<u>53. 학교설립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u>
<u>54. 학교 폭력 예방 종합대책의 수립·시행</u>	<u>54. 지방교육 행정·재정 통합시스템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시행</u>
<u><신 설></u>	<u>55. 학교 및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수립 총괄</u>
<u><신 설></u>	<u>56. 학교안전 업무의 총괄</u>
<u><신 설></u>	<u>57. 재난대비 매뉴얼, 안전 관련 교사·학부모 교육자료의 개발</u>
<u><신 설></u>	<u>58. 범정부 차원의 안전 관련 연계 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체제 구축 등</u>

<신 설>

<신 설>

55. ~ 66. (생 략)

<신 설>

59. 교육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0. 안전관리·재난상황 관리기
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61. ~ 72. (현행 제55호부터 제
66호까지와 같음)

제12조의3(학생건강정책국) ① 학
생건강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
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
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정책의 기획·총괄

2. 교육환경보호제도의 관리 및
개선

3. 학교급식 기본정책의 수립·
시행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
항

4. 민주시민교육 기본정책의 수
립·시행

5. 학생 자치활동의 활성화 및
생활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6. 인성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등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7. 학교체육 진흥 시책의 수립

· 시행

8. 초·중등학생 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

9. 초·중등학교 통일교육 및 통일대비 교육정책의 수립·시행

10. 초·중등학생 독서교육 활성화 및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1. 학교 구성원 사회·정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2.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13. 학교부적응 예방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14. 학생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의 구축·운영

15. 학교 폭력 예방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삭 제>

제13조(교육자치협력안전국) ①

교육자치협력안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

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교육자치제도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2. 교육자유특구 정책의 수립·시행

3.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정원(교원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4.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의 인사·교육훈련·복무·급여 제도 등에 관한 사항

5. 시·도교육청 평가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6. 삭 제

7. 교육 분야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 제고에 관한 사항

8. 유치원 및 초·중등 국립학교 소속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 및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9. 교육감 소속 교육 분야 공무

- 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 및 단체교섭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실태조사 등 현황
관리
- 10의2. 국립대학 소속 대학회계
직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의
고용 안정·처우 개선·단체
교섭 지원에 관한 사항
11. 지방교육재정 기본정책 및
재원의 확보·배분에 관한 사
항
12. 지방교육재정 분석·진단·
성과관리 및 재정 건전화
13.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
계의 운영과 예산·결산 분석
14. 학교설립 기본정책의 수립
·시행 및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
15. 지방교육 행정·재정 통합
시스템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
·시행
16. 학교 및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수립 총괄
17. 학교안전 및 시설 업무의 총

괄

18. 재난대비 매뉴얼, 안전 관련

교사·학부모 교육자료의 개

발

19. 범정부 차원의 안전 관련 연

계 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체

제 구축 등

20. 각급 학교 시설사업 계획의

수립·지원 및 민자유치사업

에 관한 사항

21. 교육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2. 안전관리·재난상황 관리기

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제10장 한시정원

<신 설>

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41조(의대교육지원관) ① 교육
부 인재정책실장 밑에 「행정기
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
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의대교육
지원관을 둔다.

② 의대교육지원관에 지원관 1
명을 두고, 지원관은 고위공무

<신 설>

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의대교육지원관은 제10조제3항제51호·제53호 및 제41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재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④ 의대교육지원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41조의2(의대교육기반과) ① 교육부 인재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의대교육기반과를 둔다.

② 의대교육기반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과대학 교육지원 총괄
2. 의과대학 학사(學事)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3. 의과대학 관련 고등교육기관과의 협력
4. 의과대학 발전방안의 수립·

시행

5. 의과대학의 교육역량 제고
정책 및 사업 추진

6. 의과대학 교원인사·학생정
원 제도의 개선 및 운영

7. 의과대학 교육 기반 조성 총
괄

8. 의과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
의 수립 및 대학 학생정원 자
율채정기준의 이행 점검

9. 의과대학 교원의 인사 제도
개선 및 복무에 관한 사항

10. 의과대학 관련 국립대학 교
원 정원 배정 및 총액인건비
제, 성과연봉제 운영에 관한
사항

11. 의과대학 관련 국립대학 조
교 정원 배정 및 연구성과급
지원에 관한 사항

12. 국립대학병원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3. 국립대학병원 운영 관리 및
병원장·임원 임명에 관한 사
항

14. 사립대학 의과대학 시설 및
실험실습기자재 용자 지원

제42조(한시정원) ① 삭 제 ② (생 략) ③ 삭 제 ④ <u>국립대학병원, 지역 공공의 료기관의 협업체계 강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 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 원을 교육부에 두며, 별표 4의 정원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 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충 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해 야 한다.</u> ⑤·⑥ (생 략)	<u>15. 그 밖에 의과대학 교육지원 과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u> ④ <u>의대교육기반과에 두는 공무 원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u> ⑤ <u>별표 3의2의 직급별 정원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u> 제42조(한시정원) 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⑤·⑥ (현행과 같음)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1]

교육부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92</u>	<u>687</u>	-5
·	·	·	
·	·	·	
일반직 계	<u>595</u>	<u>590</u>	-5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574</u>	<u>569</u>	-5
·	·	·	

[별표 2]

교육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11</u>	<u>210</u>	-1
·	·	·	
·	·	·	
일반직 계	<u>163</u>	<u>162</u>	-1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52</u>	<u>151</u>	-1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08